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86
----------	-------

발의연월일 : 2026. 3. 3.

발 의 자 : 김 건 · 박충권 · 김기웅
김석기 · 조은희 · 김미애
권영세 · 김용태 · 이소희
이종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취득·사육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병과하거나 판결 확정 전 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이 동물의 기증·분양 시 동물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해당자의 동물 취득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4항 및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동물사육금지처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동물의 소유자등이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에 대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게 해당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다.

제10조의3(처분의 통지 등) ① 법원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원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의 명령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동물사육금지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

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동물사육금지처분: 동물사육금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때
2. 동물사육금지가처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된 때

제4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을 “절차와 제4항에 따른 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으로, “시·도의 조례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물학대·동물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동물사육금지처분 등)</u> ① <u>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u> <u>검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u> ② <u>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u> ③ <u>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u> <u>검사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u>

에 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에 대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게 해당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다.

<신 설>

제10조의3(처분의 통지 등) ① 법원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원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명령일부부터 3일 이내에 결정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

	<u>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
	<u>④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u>
	<u>1. 동물사육금지처분: 동물사육 금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때</u>
	<u>2. 동물사육금지가처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된 때</u>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 ③ (생략)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물학대·동물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④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u>	<u>⑤ -----</u>

요건 및 <u>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u>은 <u>시·도의 조례</u>로 정한다. 제97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1. (생략) 2. ~ 10. (생략) ④ ~ ⑥ (생략)	-----<u>절차와 제4항에 따른 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u>-----<u>대통령령으로</u>-----. 제97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u>제1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한 자</u>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